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12일, 황재철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4년 4월 23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황재철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제2020-140호)로 '20년 8월 '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'로 지정되어 조성 사

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이에 풍력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,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, 에너지정책 개발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과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9조)
-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)
-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1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'20년 8월 “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”¹⁾가 지정·조성됨에 따라 풍력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거점 전문 지원기관인

1) (위치) 영덕군, 포항시 일원 (면적) 10.47km², (사업비) 11,702억원, (중점산업) 풍력

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”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5장은 기존 제19조(시행규칙)를 삭제하고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²⁾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“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~ 제21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19조(종합지원센터 설치)는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해 “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지원센터”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.

<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

- 사업기간 : 2021.7~2024.8(3년간) ※ '24년 8월 준공예정
- 위 치 :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2(제2농공단지 내)
- 사 업 비 : 190억원(국비 76, 도비 57, 군비 57)
- 규 모 : 부지 13,968㎡, 건축/연면적 3,874㎡/8,300㎡(지하1/지상4층)
- 공간계획 : 본부동(지하1층, 지상4층), 실습동(지상1층)

- 안 20조(지원센터의 기능)에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함. 이와 관련, 경북도의 향후 지원센터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능은 4가지로 크게 분류됨.

2) 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” -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

- * 1.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, 2.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
- 3.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
- 4.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
- 5.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- 1>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리
 - 융복합단지 발전전략 수립, 연관 기업 등 유치,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등
 - 2> 풍력산업 전문인력 양성
 -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교육, 풍력 운영 및 유지관리 (O&M) 산업 육성 등
 - 3>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사업관리
 - 신재생에너지 보급, 기술개발, 인재양성, 단지 활성화 등
 - 4> 에너지정책 및 대규모 사업 발굴
 - 탄소중립, 기후위기 대응, 국책사업 발굴 지원 등
- 안 21조(위탁관리 및 운영)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도 출자·출연기관,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.
-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현재 도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3개 기관이 있음.

구 분	경북테크노파크	포항테크노파크	경북개발공사
조 직	그린에너지센터	그린에너지센터	미래전략실
인 력	총 5명	총 16명	총 4명
업 무	▪ 풍력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운영 ▪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운영관리 ▪ 에너지데이터 수집 및 분석	▪ (수소팀) 수소 클러스터, 수소도시, 수소기업지원 ▪ (에너지산업) 원전협의회 운영 및 원자력기업지원, 풍력 리파워링 기술개발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▪ (에너지보급) 신재생 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	▪ 풍력, 태양광,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▪ 주민 참여형, 공기업 협업 모델 등 신재생사업 추진 ※ 설치조례 개정('22.7.)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근거 마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지정·조성되고 있는 “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”의 체계적 관리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8월 완공 예정인 “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”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합목적성과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 관련, 향후 위탁기관의 선정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지원센터의 공공성과 수익성,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한편, 금번 조례개정의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현행 조례는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다수의 개정 대상이 발견되는 바 이는 향후 추가 조례 개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정대상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예시 1> “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에너지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…한다.”

→ 목적조항에서는 “약칭”을 사용하지 않음

- 예시 2> 제3조(정의) 제10호. “환경표지 인증제품”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·유통·사용·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·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…제품을 말한다.”

→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제1항 “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…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.”

- 기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등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 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